

2021

공연예술분야 인력지원사업

::사업설명회::

단체관리자 질의응답

채용관련 | 개인으로 지원한 사람 중 선정된 사람 채용 가능한가요?

선정된 개인그룹의 예술인력은 타단체로 채용 불가능합니다.
본 사업의 중복 지원 및 수혜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.

근무시간 | 하루 6시간 근무할 경우 중식시간(휴게시간)은 1시간인가요?

네, 가능합니다.

단, 근로기준법 상 최소 휴게시간을 준수하여 근무를 진행해주시면 됩니다.

- <근로기준법 제 54조> 1) 4시간 근무 시 30분 이상 휴식
2) 8시간 근무 시 1시간 이상 휴식

근무개시 | 7월 전체 근무시간(138시간)만 채우면 근무 시작일을 7월 1일이 아닌 그 다음주(7월 6일경)으로 변경 가능한가요?

아니오, 예술인력의 경우 7월 1일 근무 개시가 원칙입니다.

타당한 사유가 있지 않는 이상, 주 30시간을 준수하여 근무일정을 계획하시기 바랍니다.

예) 공연 기간 출근, 지방 공연 출장 등

근무개시 | 근무일정 생성을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?

6월 28일 이후 협회에서 예술인력분들께 시프티 합류코드 발송 예정입니다.

이후 시프티 회원가입을 진행하시어 7월 1일 이전에 근무일정을 사전 생성 해주시면 됩니다.

근무사항 | 주근무지가 아닌 다른 곳에서 출퇴근 가능한가요?

출퇴근 기록은 반드시 사전에 신청된 주근무지에서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.
부득이한 경우, 반드시 **외근에 대한 단체관리자의 승인이** 필요합니다.

근무지설정 | 주근무지 설정 후 변경 및 추가가 가능한가요?

주근무지 설정 후 변경 및 추가는 불가합니다.

추후 변경이 불가피한 단체에 한하여, 협회 문의주시면 승인 후 관련 절차 안내 드리겠습니다.

***5개 근무지 중 다른 근무지로 변경 시 1개 삭제 후 1개 추가**

기본사항 | 기존 신청했던 프로젝트와 달라도 될까요?

아니오, 기존 제출해 주셨던 신청서를 바탕으로 심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**변경은 불가능합니다.**

주휴일 | 단체별 주휴일 설정 및 근로일 설정 가능한가요?

뮤지컬 협회의 주휴일은 월요일입니다.

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7월 1일 이전에 협회의 승인절차를 거쳐 주휴일 변경 가능합니다.

(단, 한번 설정된 주휴일은 변경 불가이며, 단체 내 모든 예술인력의 주휴일은 동일해야 합니다.)

휴가관련 | 7월에 근무자가 휴가 신청을 하면 바로 갈 수 있나요?

아니오, 7월엔 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.

7월 만근 시 발생하는 연차휴가(6시간)는 익월에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.

야간근로 | 평일공연 오후 10시 이후 끝날 경우 야간근무 가능한가요?

공연이 늦게 끝나실 경우에도 야간근로 및 연장근로는 불가합니다.

이 경우, 보다 일찍 근무를 시작하여 오후 10시 이전 퇴근해 주셔야 합니다.